

대

비

업무 위탁 계약서

(甲)

상호 : 삼성전자 주식회사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416

대표이사 : 최지성



(乙)

상호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대표이사 : 이문용



위탁인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甲")와 수탁인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이하 "乙")은/는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甲"이 [GMS 운영] 관련 제반업무(이하 "본건 업무")를 "乙"에게 위탁하여 완성하게 하고 "甲"은 그 완성에 대한 대가를 "乙"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 까지 총 12개월로 한다.
단, 계약기간은 "甲"과 "乙"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본건 업무의 범위)

- ① "乙"이 수행하는 본건 업무의 범위는 부록1 [위탁업무 및 위탁비 세부내역]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 ② 본건 업무 내용은 "甲"과 "乙"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상호합의는 문서로 하며 조정된 업무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명시한다.

제4조 (수탁인의 자격)

"乙"은 수탁자격을 구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법령적용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세무상 영업허가를 득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로 되어야 한다.

제5조 (본건 업무의 독립성)

"乙"은 본건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6조 (지식재산권)

- ① "乙"이 "甲"을 위하여 본건 업무를 수행하는 중 본건 업무와 관련하여 "乙"이 발명을 한 경우 "甲"과 "乙" 공동발명자로 출원을 한다.
이때 특허는 "甲"의 소유로 하며 그 밖에 실용신안이나 의장 등도 같다.



- ② "甲"은 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乙"은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하여 적극 협력한다.
- ③ "甲"은 "乙"의 발명에 대하여 "乙"과 협의하여 적정한 보상을 행한다.

제7조 (현장대리인)

- ① "乙"은 본건 업무 이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담당하는 자 (이하 "현장대리인")를 선임한다.
1. "乙"의 직원의 노무관리 및 작업상의 지휘명령
 2. 본 계약 위탁업무 이행에 관한 "甲"과의 연락과 조정
 3. "甲"의 주문서에 의한 주문사항의 수임, 주문서외의 특별발주 사항의 처리
 4. "乙"의 직원의 근태 확인 및 근무기강 유지
 5. "乙"의 직원이 "甲"의 사업장 내에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머물게 되는 경우에는 "甲"의 안전관리·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 및 이를 위반할 경우의 조치 내용에 관한 사전 고지
 6. 기타 본건 업무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
- ② 본건 업무에 관한 "甲"의 주문, 지시 등은 "乙"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乙"의 직원에 대하여 직접 이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乙"의 현장대리인은 본건 업무 수행 중 여하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 문제를 신속히 "甲"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④ "乙"은 현장대리인의 선임 및 교체시 "甲"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⑤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乙"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건설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甲"에게 통지한다.

제8조 (업무수행능력 보장)

"甲"은 본건 업무와 관련해서 자격증, 일정기간 동안의 경력 등 업무 숙련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인력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乙"은 이를 반드시 준수함으로써 본건 업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능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위탁비

제9조 (위탁비)

- ① "甲"은 본건 업무 완성의 대가로 "乙"에게 금[W58,440,096/년]원의 위탁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 ② 위탁비 관련 세부내역은 부록1[위탁업무 및 위탁비 세부내역]로 정한다.
- ③ 위탁비 중 본건 업무에 종사하는 "乙"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5]%로 하기로 하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乙"은 지체없이 "甲"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이 모두 포함된다.
- ④ "甲"과 "乙"은 위탁업무의 조정,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 관련 법령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위탁비를 상호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비 지불)

- ① 위탁비의 지불은 제9조에서 정해진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乙"은 "甲"에게 매월 말일 기준으로 확정된 위탁비를 30일(31일)까지 청구하고 "甲"은 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명월 30일까지 "乙"에게 지급한다.
- ② 위탁비 지급일과 지급방법 등은 "甲"과 "乙"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제출 등)

- ① "甲"은 제9조 제3항과 관련해서 위탁비 산정 및 집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乙"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乙"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② "乙"은 본건 업무 수행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甲"의 요청시 당해 자료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甲"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시설관리권 및 정보보호정책에 근거하여 "乙"의 작업장소 등에 출입 및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乙"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 할 수 없다.



④ "甲"은 제2항의 자료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확인 후 "乙"이 반환을 요구할 시에는 지체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제3장 위탁업무의 완성

제12조 (통보의무 및 방법)

"甲"과 "乙"은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 자료제출, 통지 등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서면이나 구두 기타 상대방이 인지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증)

- ① "甲"은 완성된 위탁업무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며 검증 방법은 "甲"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② "甲"은 검증결과 완성된 위탁업무의 질과 양이 당초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재작업을 요구할 수 있고 "乙"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甲"은 "乙"에게 검증과 관련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乙"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담보책임)

"甲"은 "乙"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위탁업무의 하자에 대하여 "乙"에게 하자보수 요구 또는 이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비 사후정산)

"甲"은 "乙"에게 기 지급된 위탁비가 과다 혹은 과소 지급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되, "甲"은 부당하게 이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4장 시설대여

제16조 (시설대여)

- ① "甲"은 "乙"에게 본건 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기계설비 및 시설, 작업도구 등(이하 "대여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② "乙"은 대여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본 계약 종료시 "甲"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기타 대여물품의 품목 및 비용 등 세부사항은 부록으로 정한다.

제17조 (하자통보)

- ① 대여 물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乙"은 즉시 "甲"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보가 지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乙" 또는 "乙" 직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하자 발생은 "乙"의 책임과 부담으로 즉시 처리한다.

제18조 (목적외 사용금지)

"乙"은 "甲"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대여 물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수익, 전대, 사용권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제5장 계약해제(해지)

제19조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 ① "甲" 또는 "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파산, 워크아웃, 회생절차 신청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2. 가압류, 가치분, 경매신청 등으로 본건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3. 횡령 등 금융사고로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4. "甲" 또는 "乙"에서 발생되는 분쟁, 집단퇴사 등으로 인하여 본건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乙"이 위탁비 산정 관련자료 등 제반자료를 "甲"에게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乙"이 본 계약 체결시 제출한 서류(준법 확인서 등)가 중요한 점에서 허위, 과장 또는 부실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7. "乙"이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제법령, (2)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등 본건 업무와 특별히 연관이 있는 개별법령, (3) "乙"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개별법령을 위반하는 등 법령에 위반하는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8. 기타 "甲" 또는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② "甲"과 "乙"은 상호 합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 해제 및 해지 후 조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乙"은 해제 또는 해지 당시 "乙"이 점유하고 있는 "甲"소유의 자료, 재산, 문서 및 정보 등 일체를 "甲" 또는 "甲"이 지정한 사람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일반사항

제21조 (노동관련법령 및 내부규정 준수의무)

- ① "乙"은 본 계약에 의하여 고용하고 있는 "乙"의 직원에 대한 유일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여하한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② "乙" 또는 "乙"의 직원은 "甲"의 자신의 재산에 대한 시설관리권 및 정보 보호정책에 기반한 내부규칙(이하 "사내규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乙"은 그 직원이 "甲"의 사내규칙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 ③ "乙"이 본 계약 체결시 "甲"에게 제출한 서류(준법 확인서 등)는 중요한 점에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④ "乙"은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자체 선정한 외부 노무법인을 통해서 노동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본 계약과 관련된 "乙"의 직원의 근로조건 보호 실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 그 결과물을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조치)

"乙"은 본건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甲"의 소유 또는 점유에 관련된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안전 또는 위생상의 위험, 유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甲"에게 알리고 "甲"과 "乙"은 신속하게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23조 (손해배상)

- ① "乙"은 본건 업무 수행 중 "甲"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甲"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② "甲" 또는 "乙"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甲"과 "乙"은 각각 소속 직원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중 습득한 상대방의 기밀 누설
 2. "甲" 또는 "乙"의 시설, 물품 및 집기 등의 파손 및 도난
 3. "甲" 또는 "乙"에 대한 음해, 비방 및 선동 관련 일체의 행위
 4. 배임 행위 또는 사기, 횡령 등 파렴치 행위
 5. 정당한 이유없는 본건 업무 수행의 거부
 6. 기타 본 계약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방해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甲"에게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경우 "甲"은 위탁비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 (위약별에 관한 특약)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사유 발생 당시 "乙"을 대표하는 자는 "甲"에게 "乙"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위약별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 "乙"이 본건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 가. 제1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23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21조 제4항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9조 제3항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5조 (양도금지)

"甲"과 "乙"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 할 수 없다.

제26조 (비밀유지)

- ① "甲"과 "乙"은 본건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알게 된 상호간의 비밀 및 정보 등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제3자 또는 업무상 관련없는 자에게 공개 혹은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② "乙"은 특히 "甲"의 정보보호 정책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甲"과 "乙"은 그 직원들에 대하여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27조 (지원 등)

"甲"은 "乙"이 본건 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장비나 교육관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공되는 지원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乙"의 직원이 본건 업무를 목적으로 "甲"의 사업장 내에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머물게 되더라도 Shared Service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8조 (안전관리비)

- ① "甲"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 ② "甲"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乙"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乙"은 계약체결 후 자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사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 "甲"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 (계약의 해석)

- ① 본 계약 해석에 상호 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적 관례를 참고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②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甲", "乙"이 각각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11월 25일

(甲)

상 호 : 삼성전자 주식회사
주 소 :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416
대표이사 : 최 지 성

(乙)

상 호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대표이사 : 이 문 용



# 부록 :	1. 위탁업무 및 위탁비 세부내역	1부.
	2. 사용대차 약정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1부.
	4. 이행보증각서	1부.
	5. 협력업체 출퇴근버스 이용 신청서	1부.
	6. 준법 확인서	1부. 끝.



위탁 업무 및 위탁비 세부내역

1. 위탁 업무 세부내역

구 분	대 상	업 무 범 위
위탁업무	기흥 K2 지역 (6L, 7L, 8L, 9L, S1, 14L)	Gas설비 증설/이설/철거시 GMS 개선 작업
		GMS 시스템 운영
		보고서
		A/S Call업무

2. 위탁비 관련 세부내역

구 분		세부사항	비고	
단가 항목	GMS 유지보수 업무	단가	₩58,440,096원/년	
		단위	건(연간 Turnkey) 	
단가 지급형태		단가/12개월로 月 단위 정산 지급	-	
단위 지급방법		당월 확정분을 익월 30(31)일에 "乙"의 계좌로 입금	-	
단가 추가업무 비용		추가업무 발생時 별도 견적 후 정산함	-	



사용대차 약정서

1. "甲"은 "乙"에게 위탁 업무를 도급함에 있어 본 계약에 의거 "乙"에게 아래의 품목등을 임대하고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제공 받은 시설("甲"의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후 계약종료시 원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시설 사용 중에 발생한 제반 사항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甲"과 "乙"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임대차 내역서

번호	품명	총수량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기타 치공구류는 "乙"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Clean Room 특성상 일괄구매가 불가피하거나, "甲"과 "乙"이 혼용 사용하는 경우 "甲"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이 행 보 증 각 서

(주)원익아이피에스(이하 "회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회사"가 2011년 11월 25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삼성전자 회사 소유의 설비 또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자산을 취급하고 있는 바, "본 계약" 이행 과정에서 "회사" 소속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 설비, 시설 또는 자산에 멸실, 훼손, 고장 등이 발생함으로써 삼성전자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위 손해를 모두 배상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문용 (이하 "본인")은 "회사"의 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을 서약하는 바입니다.

2011년 11월 25일

"회사" 상호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대표이사 : 이 문 용

"본인" 성명 : 이 문 용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주민등록번호 : 520528-1018726

삼성전자 주식회사 귀중



협력업체 출·퇴근버스 이용 신청서

1. 회사 개요

- 회사명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사업자 등록번호 : 133-81-27249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전화 : 031) 8047-7000
 대표 : 이문용



2. 출입목적 : 업무수행

3. 관련부서 : Facility기술팀

4. 기간 : 2011. 10. 1 ~ 2012. 9. 30

5. 이용인원 : 업체 재직인원에 한함

6. 이용노선 : 삼성전자 출퇴근버스 운행 전 노선

상기와 같이 귀사의 출퇴근 차량을 당사 사원도 무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로 인해 당사 사원이 사상 시에는
당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고,
이로 이해 발생되는 비용 일체는 당사에서 부담토록 하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과 보상들을 귀사에 청구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서약자

업체명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대표 : 이문용



삼성전자 주식회사 귀하



비밀유지계약서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이~~주~~(이하 "을"이라 한다)은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2011년 11월 25일, GMS 유지보수 업무(이하 "목적 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갑"/"을")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고 비밀정보를 수령하는데 있어서 양 당사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갑 : 최지성



을 : 이문용



제 3 조 (비밀 정보)

-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 ② "정보제공자"(("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정보수령자"("비밀정보"를 제공 받는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자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정보수령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이하 "관련 임직원"이라 한다)으로서 첨부 "비밀유지계약" 참여자 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관련 임직원" 외에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관련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정보제공자"와 제3자 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계약 기간)

-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 간(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 6 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제 8 조 (보증)

-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9 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 ①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②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 제공자"에게 있으며, "정보수령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개량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적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0 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i)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목적사업"이 종료 또는 Drop 된 경우, iii)"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손해배상)

-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 12 조 (구속력)

- ①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 14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5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첨부 : 비밀유지계약 참여자 서약서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1. 11. 25.

"갑"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416

대표이사 죄 지 성



"을" ("을"이 법인일 경우)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정호로 332-1

대표이사 이문용



"을" ("을"이 법인이 아닌 개인일 경우)

이름(개인사업체 대표)(주민등록번호) (인)

주민등록상 주소

개인사업체명

개인사업체 사무소 소재지



첨부

비밀유지계약 참여자 서약서

아래 참여자는 "본 계약"(상기 비밀유지계약서)을 세심히 읽어 보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삼성전자주식회사>

No	부서명 (Department)	부서장 (Manager)	참여자 (Participant)	서명/印 (Signature)	사원번호 (Employee NO)	비고 (Remark)
1	Facility 기술팀	김태호 수석	김호왕 수석		95028889	
2	"	"	박광선 책임		91000665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

No	부서명 (Department)	부서장 (Manager)	참여자 (Participant)	서명/印 (Signature)	사원번호 (Employee NO)	비고 (Remark)
	TGS본부/GMSP	김재빈 상무	정문모 부장		1920901	
	TGS본부/GMSP	김재빈 상무	이재근 과장		2000315	

준법 확인서

1. 상호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2. 확인 내용

확인 항목	확인 내용
1.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 하는가 ?	예
2. 4대보험가입을 하였는가 ?	예
3. 사업계획서를 매년 작성 하는가 ?	예
4. 작업공정도를 작성하고, Review를 하는가 ?	예
5. 소속근로자들이 업무상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하였는가?	예
6. 인력배치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	예
7. 작업배치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	예
8. 일일작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	예
9. 일일근무현황을 작성하고 있는가 ?	예
10.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가 ?	예
11. 업무수행 및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가 ?	예
12. 휴가사용 및 결재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	예
13. 연장근로 및 결재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	예
14. 취업규칙 및 사규에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가 ?	예
15. 근로자 명부에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이 반영되었는가 ?	예
16.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 휴무 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	예
17. 통상 임금 산정시 누락된 사항은 없는가 ?	예
18. 미 사용 연월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였는가 ?	예
19. 퇴직급여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였는가 ?	예
20.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가/퇴직금이 충당되고 있는가 ?	퇴직연금 가입
21. 정기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진행하였는가 ?	예
22. 노사협의회 규정, 회의록,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문제는 없는가 ?	예

상기의 확인 항목에 대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상기의 확인서가 허위,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당사가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일 : 2011년 11월 25일

상호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대표이사 : 이문용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번지 TEL. (031) 8047-7000 FAX. (031) 8047-7083

문서번호 : 원익 IPS-111128-01 호

수 신 : 삼성전자 Facility 기술팀 GCS 기술 PJT

참 조 : GCS 기술 PJT 박광선 책임

제 목 : 원익 IPS GMS 현장대리인 통보의 件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의 현장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 협조 요청드립니다.

- 약 래 -

□현장대리인 현황

구분	성명	직책/직급	비고
1	이재근	과장	현장대리인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이사 이 문

